

예 산 총 칙

201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22,621,147	21,678,634
일반회계		647,545,884	19,426,377
특별회계		75,075,263	2,252,258
공기업특별회계		61,032,149	1,830,964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33,632,868	1,008,986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27,399,281	821,978
기타특별회계		14,043,114	421,293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500,000	15,000
	의료급여특별회계	2,941,233	88,23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24,000	24,720
	수질개선특별회계	1,393,154	41,795
	농공단지특별회계	234,000	7,020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4,000	420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152,465	4,57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965,394	58,962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28,000	840
	주택사업특별회계	719,868	21,596
	주차장관리특별회계	3,721,000	111,630
	토지관리특별회계	350,000	10,500
	도시재생특별회계	1,200,000	36,0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생 략(채무부담)

제 4 조 생 략(계 속 비)

제 5 조 생 략(영시이월)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405,50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